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노동계약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노동계약법에서는 노무파견범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노무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직무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정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직원의 노동 보수에 대하여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관리조례」 개정

지난 6월 8일, 국무원 반공청은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였으며 개정 외자보험관리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외자보험관리조례에서는 외국보험사의 경우 국제통화로만 출자할 수 있다는 제한을 삭제하고 인민폐로도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 내용은 보험회사의 출자에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폐의 국제화 위상을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 제정

국무원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는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을 갈음하는 법규로 동 조례에서는 F비자, L비자를 세분화하였고 외국의 고급인재와 전문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R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비자 종류는 기존의 8가지에서 12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